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재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부모급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한시조직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을 삭제한다.

제4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별표 4 중 총계 “866”을 “8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56”을 “86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25”을 “829”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315”을 “317”로 하고, 일반직 계 “315”을 “31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11”을 “313”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1)을 삭제하며, 같은 표 2)부터 10)까지를 각각 1)부터 9)까지로 한다.

별표 6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7에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5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둔다.	<삭 제>
②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정비	
3.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사업 총괄·조정 및 품질 관리	
4.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인프라 설계 및 구축
5.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 보 연계
6.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관계부처·지방자 치단체·유관기관과의 협의· 조정
7.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사용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방안 마 련
9.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기술 적용계획 마련 및 시 행
10. 그 밖에 차세대사회보장정 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별표 6의 정원 중 2명(4급 또

는 5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 전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 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 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5조(한시정원) ① ~ ③ (생 략) <신 설>	제45조(한시정원)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 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 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 복지부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66</u>	<u>870</u>	+4
·	·	·	
·	·	·	
일반직 계	<u>856</u>	<u>860</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25</u>	<u>829</u>	+4
·	·	·	
·	·	·	

[별표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15</u>	<u>317</u>	+2
일반직 계	<u>315</u>	<u>317</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11</u>	<u>313</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0